

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1. 4. 16

나. 제출자 : 전덕생 의원 외 23명

다. 회부일자 : 2001년 4월 16일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86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(2001. 4. 20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전덕생 의원)

제안이유

- 부천시도시계획조례의 제24조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제25조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적용기준이 일반지역과 도시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지구와 차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
- 동 계획구역 안의 건축물에 건폐율·용적률 등을 세부적, 종합적으로 정한 지구단위계획의 도입 취지에 배치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측면에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타시(광주광역시, 의왕시)의 도시계획조례와 같이 경과조치를 두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

주요골자

-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경과조치를 이 조례 규정에 의함을 종전의 규정에 의하므로 조정(부칙 제5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<p>○ 현행 조례에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이 일반 지역과 지구단위계획지구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어 불합리하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 인가?</p> <p>○ 개정 조례안 부칙에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3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였는데 이유는?</p>	<p>○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의 건축물에 건폐율, 용적률 등을 세부적, 종합적으로 정한 지구단위계획의 도입취지에 배치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측면은 물론 조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임</p> <p>○ 현행 조례에 경과조치를 개정하지 않을 경우, 기존 80%에서 60%로 개정된 범위 내에서 건폐율을 적용받다가 향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조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화지구로 지정하게 됨에</p>

따라 다시 80%의 건폐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일정기간 동안 건축하려는 자는 상당한 불이익이 초래되어 이에 대한 적용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방화지구로 지정되기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기 위해 3년의 경과기간을 두는 것임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474호
의결년월일	2001. 4. 24 (제86회)

제출년월일 : 2001. 4. 16

제 출 자 : 전덕생 의원 외 23인

□ 제안이유

- 부천시도시계획조례의 제24조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제25조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적용기준이 일반지역과 도시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지구와 차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
- 동 계획구역 안의 건축물에 건폐율·용적률 등을 세부적, 종합적으로 정한 지구단위계획의 도입취지에 배치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측면에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타시(광주광역시, 의왕시)의 도시계획조례와 같이 경과조치를 두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경과조치를 이 조례 규정에 의함을 종전의 규정에 의하므로 조정(부칙 제5조)

- 개정조례(안) : 불임
- 관계법령발체서 : 불임
- 예산 수반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- 기타 참고 사항 : 불임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, 제5조 내지 제9조를 제6조 내지 제10조로 하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재개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으로서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결정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허가·인가 및 승인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.

제5조(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상세계획 또는 도시설계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구역("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지구로서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지 않는 지구"에 한한다.) 안에서 건축물의 허가·인가 및 승인 등에 있어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62조 및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택지개발사업 준공("택지개발촉진법"에 의한 준공일을 말한다.) 후 3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지구단위계획 및 재개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상세계획 또는 도시설계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인 구역과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으로서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결정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허가·인가 및 승인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.	제4조(재개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으로서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결정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허가·인가 및 승인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.

<신설>

제5조(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상세계획 또는 도시설계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구역("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지구로서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지 않는 지구"에 한한다.) 안에서 건축물의 허가·인가 및 승인 등에 있어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62조 및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택지개발사업 준공("택지개발촉진법"에 의한 준공일을 말한다.) 후 3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제5조~제9조 (생략)

제6조~제10조 (현행과 같음)